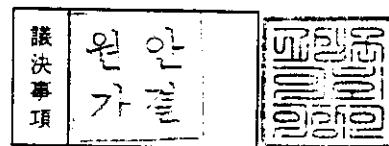


議案番號	第 285 號
議決年月日	1995. 5. 27. (第 33 號)



고성군사무의 읍 면위임조례증개정조례(안)

提出者	固城郡守
提出年月日	1995. 5. 19.

# 고성군사무의읍 면위임조례증개정조례(안)

제출연월일 : 95. 5. 19.

제출자 : 고성군수

의안	
번호	285

## 1. 개정사유
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한 농지전용신고 업무를 행정지시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하고 있으나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(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)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위임토록 되어있는바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농지전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져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토석의 채굴 및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(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호) 및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과 양어장등 간이 농어업용 시설로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(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) 3천 300제곱미터이하의 농지 일시전용 허가에 관한 권한.
- 나.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6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·이경우 그 신고전용은 1회에 한하는 권한.
- 다.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천 500제곱미터이하의 농업용시설. 다만, 양축시설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3천 300제곱미터(진흥지역밖 농지는 7천 제곱미터)이하의 신고전용 권한.
- 라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그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천 제곱미터이하의 어린이놀이터·마을회관·집하장·장고 기타 농어민의 공동 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신고전용 권한.

- 마.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어업용 장고등 어업용시설. 다만, 양어장 및 양식장은 3천300제곱미터(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7천제곱미터)이하의 신고전용 권한.
- 바. 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농기계보관시설 · 농산물건조시설 · 탈곡장시설 · 또는 농업용창고시설의 신고전용 권한.
- 사.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 · 조합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당해 농어가조합원 또는 생산자단체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유통 · 가공을 위하여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의 징하장 · 선과장 · 판매장 · 창고 또는 가공 공장 등 농수산물의 유통 · 가공시설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등.

(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57조)

## 고성군사무의 읍·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고성군사무의 읍·면 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[별표] 권한위임사무 연번 중 77번·78·79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연 번	위 임 사 무 명	근거 및 적용법률	비 고
1번부터 76번까지	( 생 략 )	( 현행과 같음 )	
77	<p>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및 4호 규정에 의한 3년이내의 기간동안 3천3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에 관한허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</li> <li>·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어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</li> </ul>	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(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)	
78	<p>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1호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이 경우 그 신고전용은 1회에 한한다.</li> <li>·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시설. 다만, 양축시설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3천300제곱미터(전통지역 밖 농지는 7천제곱미터) 이하로 한다.</li> <li>·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그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의 어린이놀이터·마을회관·집하장·창고 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</li> </ul>	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(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)	

연 번	위 임 사 무 명	근거 및 적용법률	비 고
79	<p>면 읍 을 위한 시설      농립수산부령이 정하는      농어가가 설치하는 1천 500      제곱미터 이하의 어업용 장      고등 어업용시설. 다만, 양      어장 및 양식장은 3천 300      제곱미터 (진 흥지 역 밖의      농지는 7천 제곱미터) 이하로      한다.</p> <p>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      사가 설치하는 1천 500제곱      미터 이하의 농기계보관시      설·탈곡장시설 또는 농업      용장고시설</p> <p>농립수산부령이 정하는      농어가·조합법인 또는 생      산자단체가 당해 농어가·      조합원 또는 생산자단체구      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     유통·가공을 위하여 진 흥      치역 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     3천 300제곱미터 이하의 집      하장·선과장·판매장·장      고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      산물의 유통·가공시설</p> <p>농어촌발전특별조지법 제47     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      상수의 식재·재배신고</p> <p>농지에 농립수산부령이 정      하는 다년생식물 또는 관      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      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      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   불구하고 이를 재배하거나      식재할 수 있다. 다만, 관상수      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고자      하는자는 당해 농지의 소      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    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읍     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</p>	<p>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     제15조(농립수산부 훈령 제      784호)</p>	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【별표】				【별표】			
권 한 위 임 사 무				권 한 위 임 사 무			
연번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률	비 고	연번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률	비 고
1번 부터 76번 까지	(생략)	(생략)		1번부터 76번까지	(생략)	(현행과 같음)	
				77	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및 4호 규정에 의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천 3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에 관한 허가 · 농지 개량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자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·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어업 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	농지 전용업무 처리 세부 규정 제15조(농림수산부 춘령 제784호)	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정안			
〔별표〕 권한위임사무				〔별표〕 권한위임사무유			
연번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률	비고	연번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률	비고
				78	<p>농어촌밀전특별조사법시행령 제57조1호내지 제6호의 규정 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60제곱 미터이하의 농가주택으로 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 이 경우 그 신고선용은 1 회에 한한다.</li> <li>·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천500 제곱미터이하의 농업용시 설. 다만, 양축시설 및 아 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3천300제곱미터(신풍지역 밖 농지는 7천제곱미터) 이하로 한다.</li> <li>·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 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그</li> </ul>	<p>농지전용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(농림수산부 훈령 제7 84호)</p>	

## 신·구조문대비 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〔별표〕 권 한 위 임 사 무				〔별표〕 권 한 위 임 사 유			
언번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률	비 고	언 번	위 임 사 무 명	근거 및 적용법률	비 고
					<p>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의 어린이놀이터·마 을회관·집하장·장고 기 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</p> <p>농립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가 설치하는 1천500 제곱미터 이하의 어업용 창 고등 어업용시설, 다만, 양 어장 및 양식장은 3천300 제곱미터 (진흥지역밖의 농자는 7천제곱미터) 이하로 한다.</p> <p>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 사가 설치하는 1천500제곱 미터 이하의 농기계보관시 설·탈곡장시설 또는 농업 용 장고시설</p>		

# 신·구조문대비 표

현 행				개정안			
【별표】 권한 위임사무				【별표】 권한 위임사무유			
연번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률	비고	연번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률	비고
79				79	<p>농립수산부령이 성하는 농어가·조합법인 또는 생 산자단체가 당해 농어가· 조합원 또는 생산자단체구 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·가공을 위하여 전통 지역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3㏊300세곱미터 이하의 심 하장·선과장·판매장·장 고·또는 가공공장등 농수 산물의 유통·가공시설</p> <p>농어촌발전특별조사법 제47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 상수의 삭재·새매신고</p> <p>농지에 농립수산부령이 성 하는 다년생식물 또는 관 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 는 농자의 보전 및 이용에관 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재배하거나 식재할 수 있다. 다만, 관상수 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농사의 소</p>	<p>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(농립수산부 훈령 제 784호)</p>	